

학습설계 상담 운영 규정

제정 2026.06.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학습설계 상담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습설계 상담”이란 재적생의 전공 탐색, 학업 계획 수립 및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학습상담 활동을 말한다.
2. AA(Academic Advisor, 학습설계지도교수, 이하 “AA”라 한다)란 학습설계를 상담하는 교원 및 산업계 외부전문가를 말한다.
3. PAM(Peer Academic Mentor, 동료학습설계멘토, 이하 “PAM”이라 한다)이란 동료 학생의 학업 적응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재적생을 말한다.
4. “담당부서”란 학습설계 상담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교무업무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 방향) 학습설계 상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운영한다.

1.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학습상담을 통해 지원한다.
2. AA와 PAM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.
3.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.

제4조(담당부서) ① 담당부서는 학습설계 상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AA 및 PAM 인력 구성 및 관리
2. 상담 신청·매칭 지원 및 상담 이력 관리
3. AA·PAM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
4. 운영 성과 수집 및 제도 개선 지원
5. 그 밖에 학습설계 상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AA(Academic Advisor, 학습설계지도교수)제도

제5조(목적) AA는 학습상담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·적성을 탐색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 하며, 개인 맞춤형 학업 계획을 스스로 수립·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(구성) ① AA는 교원·산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세부 구성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스쿨(학과)별 AA 배정은 원장(학과장)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부서장이 정한다.

제7조(상담 내용) ① AA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공 탐색 및 교육과정 설계
 2. 학습상담·학습지도 및 학업 개선 방향 안내
 3. 그 밖에 학생의 학업에 관한 사항
- ② 상담 방식 및 횟수는 학생과 AA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.
- ③ 모집단위 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스쿨(학과) JA와의 상담을 권장한다.

제8조(지원 내용) AA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적인정,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PAM(Peer Academic Mentor, 동료학습설계멘토)제도

제9조(목적) PAM은 학생 멘토가 동료 학생과 학습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0조(선발 및 자격 취소) ① PAM의 지원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PAM이 상담 활동에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활동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활동 내용) ① PAM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1. 학업 적응 지원 및 수강신청 안내
 2. 대학생활 정보 및 학교 제도 안내
 3. 동료 학습 모임 운영 및 멘토링
 4. 그 밖에 동료 학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
- ② 활동 방식·횟수 등 세부 운영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지원 내용) PAM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금, 확인서 발급,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상담 운영

제13조(상담 신청) ① 학생은 담당부서가 정하는 방법으로 AA 또는 PAM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담당부서는 상담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매칭을 지원한다.

제14조(상담 기록 및 관리) 상담 기록의 관리 방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연계 지원) AA 및 PAM은 상담 과정에서 학습상담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,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내 관련 부서에 안내할 수 있다.

제5장 성과 관리

- 제16조(운영 성과 관리)** ① 담당부서는 학습설계 상담 제도의 운영 성과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② 담당부서는 운영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운영 계획에 반영한다.
- ③ 성과 지표 및 점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7조(우수 사례 공유) 담당부서는 우수한 AA, PAM 상담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제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6장 보칙

제18조(비밀 유지) AA 및 PAM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위임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.07.15.부터 시행한다.